(주) 화승인더스트리	규 정	HSIS-A-03-02	입안부서	경영관리팀
	감사위원회 운영		제정일자	2016. 5. 20
			페 이 지	1 / 7

승 인

개정번호	개 정 일 자	작 성	검 토			승 인
			매니저	임 원		
1	2026. 3. 20					
		/	/	/	/	/

회 람

성 명								
날 인								
회람일								
성 명								
날 인								
회람일								
성 명								
날 인								
회람일								

개정 이력 내용

개정 번호	개 정 일 자	개 정 내 용	품질보증본부 확인			
			확인일자	담 당	팀 장	본부장
0	2016. 5. 20	제정				
1	2026. 3. 20	개정 - 입안부서명 변경 (경영기획팀 → 경영관리팀) - 사외이사 명칭 변경 (사외이사 → 독립이사) - 위원회의 주요 권한 추가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제1장 총칙

1. 목적

본 규정은 (주)화승인더스트리(이하 '회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치, 권한 및 기능

2.1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2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3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4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5 위원회는 2.3항, 2.4항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구성

3. 구성

3.1 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단,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3.3 위원 중 1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3.4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2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이사의 구성 비율 또는 3.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안 부서	경영관리팀	배 포 처	전 부 서

4. 위원장

4.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독립이사 중에서 8항에 의한 결의로 정한다.

4.2 위원장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4.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이사 중에서 최장기간 이사로 재직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최장기간 이사로 재직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5.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6. 소집권자

6.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6.2 각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3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7. 소집절차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늦어도 3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8. 결의방법

8.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8.2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8.3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 감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4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8.5 8.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권한과 의무

9. 위원회의 주요 권한
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고, 아래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9.1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상법 제412조의 3 관련)
9.2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상법 제402조 관련)
9.3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상법 제412조 관련)
9.4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대한 대표 (상법 제394조 관련)
9.5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 수령 (상법 제412조의 2 관련)
9.6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상법 제412조 관련)
9.7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상법 제41조의 4 관련)
9.8 외부감사인의 선임, 변경 또는 해임에 대한 승인 (외감법 제4조 관련)
9.9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 처리 등에 관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외감법 제2조의 2 관련)
9.10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및 평가 (외감법 제2조의 2 등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9.11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조력 요구 (상법 제412조 관련)
9.12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9.13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0. 위원회의 주요의무
위원회의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고, 아래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위원회의 의무사항을 정할 수 있다.

10.1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에게 제출 (상법 제447조의 4 관련)
10.2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 (상법 제413조 관련)
10.3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를 이사회에 보고 (상법 391조의 2 관련)
10.4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이사회에 보고 (외감법 제2조의 2 관련)
10.5 직무상 취득한 기밀의 준수 의무 (상법 제 382조의 4 관련)
10.6 감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11. 독립의 원칙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12. 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한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으며,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5장 기타사항

13. 질서유지

13.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가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2 위원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14. 의사록

14.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14.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5. 간사 등

15.1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도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15.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16.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17.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8.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하 여 백 -